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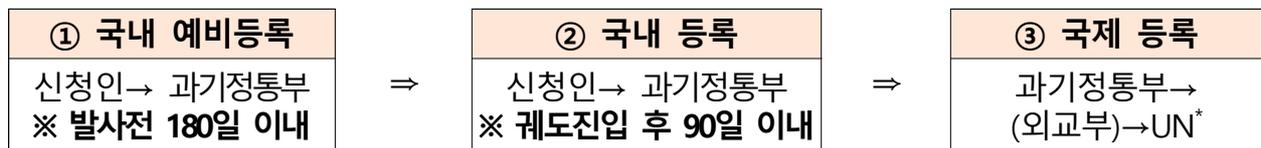
인공우주물체 등록 절차 안내

(’22. 5. 23., 거대공공연구정책과)

□ 개요

- 우주공간에서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계·제작된 인공우주물체의 체계적 관리 등을 위해 국내·외 우주물체 등록제 운영
- 법적근거
 - (UN조약) 「외기권에 발사된 물체의 등록에 관한 조약」(’76발효, ’81가입)
 - (국내법) 「우주개발진흥법」 제8조(국내등록) 및 제9조(국제등록)
 - (국내법) 「전파법」 제44조(인공위성의 국제연합 등록)

□ 등록절차



* UN COPUOS(Committee on the Peaceful Use of Outer Space, 우주공간 평화이용위원회)

- (국내 예비등록) 발사 예정일부터 180일 전까지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예비등록 요청
 - 신청인 : ‘예비등록신청서’와 ‘발사계획서’ 제출
 - 과기정통부 : 발사계획서 검토 후 ‘예비등록증’ 교부
- * 손해배상 책임부담능력 등이 미흡하다고 판단 시, 시정·보완 요구가능

【제출자료 내용】

예비등록 신청서	발사계획서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신청인(기관)에 대한 정보 - 우주물체명 - 예비등록 하고자 하는 내용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우주물체의 사용목적에 관한 사항 - 우주물체의 소유 또는 이용권자에 관한 사항 - 우주물체의 기본적 궤도에 관한 사항 - 우주사고 발생 시의 손해배상책임 이행에 관한 사항 - 그 밖에 발사이용 및 관리와 관련된 사항

○ (국내 등록) 위성궤도 진입일 부터 90일 이내에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등록 요청

- 신청인 : '등록신청서' 제출
- 과기정통부 : '등록증' 교부

【제출자료 내용】

국내 등록 신청서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신청인(기관)에 대한 정보 - 우주물체명 - 등록 하고자 하는 내용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예비등록 후 변경사항 - 발사일시 및 장소 - 위성궤도 진입일시

○ (변경 통보) 변경사항 발생 시, 사실 확인 후 15일 이내에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통보

- 신청인 : '등록변경통보서' 및 관련서류 제출
- 과기정통부 : 변경내용 반영

※ 제13조 발사허가의 취소 및 청문 1항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발사 예정일부터 1년 이상 발사를 지체한 경우 우주 발사체 발사허가를 취소 할 수 있음

○ (국제 등록) 과기정통부 장관은 외교부 장관에게 국제연합에 등록 요청

- 신청인 : '국제 등록 신청서' 제출
- 과기정통부 : '국제 등록 신청서'를 외교부에 제출

※ 「전파법」 제44조제1항에 따라 국제연합에 등록하는 인공위성에 대하여는 국제 등록할 필요 없음

【제출자료 내용】

국제 등록 신청서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발사국 및 복수 발사국명 - 우주 물체의 적절한 기탁자 또는 동 등록번호 - 발사 일시 및 발사지역 또는 위치 - 다음을 포함한 기본 궤도 요소(노들주기, 궤도 경사각, 원지점, 근지점) - 우주물체의 일반적 기능